대학원 연구지원비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및 각 대학원생들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원생 연구지원비(이하 “연구지원금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“연구지원금”이라 함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지원금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대학원 및 각 대학원에 정규학기 등록 중인 자를 연구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한다. (2025.6.26.)

제 4 조 (연구지원대상) 본 내규에 의한 연구실적 인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. (2025.6.26.)

① 연구지원대상은 단독연구와 공동연구 형태의 제6조 제1항의 연구실적물(논문)로 한다. (2025.6.26.)

② 삭제 (2025.6.26.)

③ 삭제 (2025.6.26.)

④ 삭제 (2025.6.26.)

⑤ 연구실적물 연간 인정기간은 학년도 기준(당해 연도 3월 1일 ~ 익년 2월 마지막일)으로 하며, 정규등록학기 마지막학기인 경우에는 학위수여일 이전으로 한다. 연구실적물 인정은 논문게재일로 한다. (2025.6.26.)

제 5 조 (연구지원금 신청방법) ① 해당학과 또는 전공에 논문을 제출하여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결재 후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 (2025.6.26.)

② 해당 논문은 게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술지 발간이 학회의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게재예정증명서(게재예정일 명시)로 제출할 수 있고, 게재 후 연구실적물(논문)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. (2025.6.26.)

④ 연구지원금 신청으로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장학금을 이중 수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 시 학생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하여 지급한다. (2025.6.26.)

⑤ 공동연구 연구실적물의 경우에도 연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연구비 지원금액 산출은 제6조 4항에 따른다. (2025.6.26.)

제 6 조 (연구지원금 지급방법) ① 연구지원금은 논문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. (2025.6.26.)

등급	논문	연구지원금	지원횟수
A1-Ⅰ	국제저명학술지 (SCIE, SSCI, A&HCI)	200만원	저자 구분없이 제한없음
A1-Ⅱ	국제우수학술지 (SCOPUS)	100만원	
A2	국내우수학술지 (한국연구재단등재지)	50만원	

② 삭제(2020.4.23.)

③ 연구지원금은 게재된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. (2025.6.26.)

④ 연구지원금은 저자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. 단, 본교 전임교원 1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인 경우에는 교원 수를 저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 (2020.4.23.)(2025.6.26.)

저자 구분		연구지원금 환산
단독		연구지원금 × 100%
제 1저자, 교신저자		연구지원금 × 70%
제 2저자	제1저자, 교신저자가 본교 대학원생인 경우	연구지원금 × 50%
그 외 저자		연구지원금 × 30%

⑤ 기한 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 (2025.6.26.)

제 7 조 삭제 (2025.6.26.)

제 8 조 (지급제한) 연구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, 당해 연도 연구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25.6.26.)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6.26.)
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시행일 전에 게재(논문게재일 기준)된 연구실적물의 연구지원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